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 확대〉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65)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6. 16.
3. 회 부 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 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u>보호대상자로서</u>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u> ----- ----- ----- ----- ----- ----- ----- ----- 1. <u>보호대상자</u> 2. <u>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u>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항¹⁾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지역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제3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 등에게 보호를 신청해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배제²⁾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는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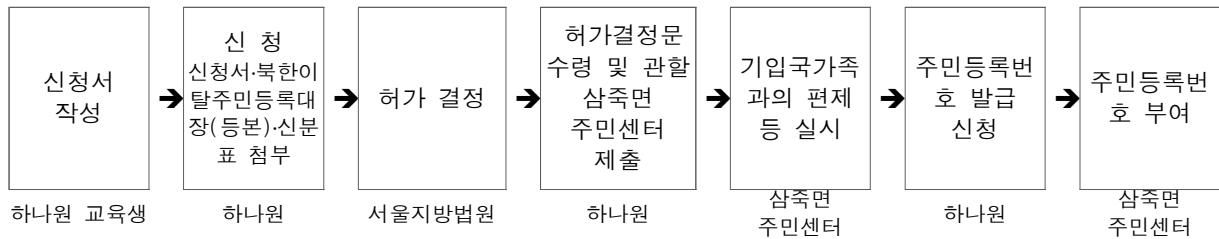
2)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출생지에 따라 ① 북한출생, ② 중국 등 제3국 출생, ③ 남한출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북한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② 제3국 출생 자녀는 현지법에 따라 해당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③ 남한출생 자녀의 경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 등이 없어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함.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 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당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의 생활고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

3국 출생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미성년 자녀가 동반 입국하여 부 또는 모와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행정낭비적인 측면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의2³⁾는 정착지원시설 내의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에 “탈북 청소년”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탈북 청소년”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였고,

제24조의3⁴⁾은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제24조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3)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4)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는 그 자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음.⁵⁾

- 또한, 통일부는 현재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자가 아닌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교육 및 학교적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정착지원시설 내의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에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그 초기 정착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용하는 입장이며, 부모와 떨어져 단독으로 입국하여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제3국 출생자녀도 있기에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참고로, 교육부가 운영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학생이나 청소년 집단을 나타낼 때는 “탈북청소년”,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탈북학생”(이하 “탈북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음.

< 탈북학생 개념 정의 >

구분		개 념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탈북학생	북한출생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3국출생	부모 가운데 최소 한쪽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제3국에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남한출생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참고자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서

원적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사건본인:

생년월일:

신청취지

등록기준지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로 정하고 사건본인 ○○
○을 별지 신분표의 기재사항과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바랍니다.

원인사실

사건본인 ○○○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아니한 자입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통일부장관 (인)



서울가정법원장 귀하

문 의 처
02)6788-5267